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5. 29.(목)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의안조정팀에서 의사일정이라고 6가지가 되어 있는데 순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끝에 주요현안이라고 분류해서 논의했었습니다. 장시간 논의 결과, 제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계류시킨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논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오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안건이 분류가 됐는지, 만약에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면 <주요현안>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6가지 논의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논의하는 순서를 효율적인 진행,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렇게 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는 ‘한국방송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관한 사항’이었고, 의안명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 바로 받아본 내용으로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논의한 결과, 그것은 <의결사항>이라기보다는 <현안사항>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안조정팀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제안하신 김재홍 위원님께서 이것은 <의결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안건이 복잡한 것부터 간단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 논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바>항에 있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 시행시기 결정은 저희의 <의결사항>이고, 그다음에 그와 연결돼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이동건수가 많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로서의 대책, 앞으로의 사실조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보도에 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오늘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논의해서 정리한 다음에 논의가 간단한 부분부터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일단 의견을 들은 것처럼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난번 회의처럼 나중으로 돌려서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어떨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속행을 해서 계속 또 논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티타임이, 사전 간담회가 법령상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거듭 본회의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기주 위원께서도 지난 화요일 날 티타임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지난번 <현안사항> 토론만 했고, 이번 회의 때는 정식 <의결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따로 <의결안건>으로 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점을 잊으셨는지 여기에서 다시 지적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후속조치로 전체 상임위원 회의에서는 이번에는

<의결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다 목인 내지 동의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허원제 부위원장도 끄덕끄덕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이 <의결안건>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 화요일 날 티타임에 여러 안건을 장시간 논의했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홍 위원님께서 'KBS 사태와 관련된 사안을 어제 밤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의결안건>으로 올리시겠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말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건을 본 것이 오늘 9시 20분쯤 그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근거 법률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내지는 행정처분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시간이 짧아서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안건>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논의를 해야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티타임 때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의결안건>으로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 간에 제 생각에는 <나>, <다>, <라>, <마>, <바>는 그때 티타임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해서 의견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건 논의순서를 위원장님도 <바>, <마>를 먼저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소관 국별로 분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를 들면 <바>, <마> 그리고 <나>, <다> 같이 묶어서 하고, <라> 하고 그다음에 <가> 안건을 지금 <의결안건>으로 적합하냐, 안 하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논의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안건 순서를 제가 일종의 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김재홍 위원께서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목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날 김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경청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목인한 것은 아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저도 9시가 넘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의결해야 할 사안인지,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단말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순서를 조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KBS 정상화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의결안건>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처음부터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고, 이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가> 안건이 <의결안건>인지 아닌지는 또 과거에 그것을 <의결안건>으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그것이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면 <의결안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결사항>이 아니면 <의결안건>이 아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의결안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항 안건은 많은 시간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내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행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선 어느 정도 저희들끼리 논의가 돼서 상황과약이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안건을 올리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와 장벽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상임위원들 간에 마치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긴급사안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티타임에서 거론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안건을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올린 안건조차도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야겠냐?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안건입니다. 안건이 되는데 의결할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자리에서 <의결안건>에 대해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요.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이 자리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순서를 저는 오늘 아침에 이용자정책국장이 와서 통신시장 관련 이 안건에 대해서 언론에..., 언론 전체가 아니고, 석간 어디에선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 언론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정책 홍보상 중요하니까 그랬고요. 나머지 이것들 맨 뒤로 빼서 하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매우 긴급한 사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화요일에 이미 말씀 드렸고, 그때 이미 KBS이사회가 28일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것을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의결안건>으로 정리해서 올리겠다

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시다시피 KBS 이사회는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사장 해임 제청(안)은 표결을 보류했습니다. 6월 5일 이후로 넘겼습니다. 또 저는 지난 26일 월요일 오전·오후에 걸쳐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하루 종일 오전·오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에 대한 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봤습니다. 거기에서 여야 미방 위원들 간에 합의된 지적과 주문이 나온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예를 들면 이상일 의원 같은 분도 똑같이 방통위가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고 주문했습니다. '최소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직무유기다' 그렇게 지적을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미방위의 일회성 정책질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겁게는 국정감사에 금년도 최대 최고의 사건·사고 재난이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예결위에서는 또 본회의 못지않게 다시 대정부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방통위가 세월호 참사와 KBS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느냐, 직무상 해야 할 근거가 없느냐,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이 만일 불똥이 그렇게 되면 방통위의 위상은 물론이고 직무적인 무능과 무책임과 또한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방통위에 소속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직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방위에서 위원장의 답변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하겠다, 두어 번 답변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국회에서 약속한 것, 답변한 것 지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긴급사안은 뒤로 미뤄질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토의안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든가 계류시키든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번으로 하자는 것은 동의했습니다만 그 이상 이것을 뒤로 빼서 단순한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나 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것을 <의결안건>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그렇게 의결안건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듣기로 <의결안건>인지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정하자고 지금….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기주 위원께서 <의결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그런 취지는 제가 아니라고….

○ 김재홍 상임위원

- <의결안건>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느냐, 그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부당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발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논의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따라서 <의결안건>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단순한 <현안사항>으로 논의할 것인지는 내용을 보고 오늘 논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순서대로 해 주셔야지 뒤로 빼서 한다는 것은... 해질녘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 끝내야지요. 원래 의안 순서가 상임위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국 건제 순으로 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이 발의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만 건제 순으로 해야지요. 상임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각설하고, 우리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회의 때마다 무제한 토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 검토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안건들을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적으로 토론도 많이 됐고, 의견접근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안건들이 <가>번을 제외하고는 5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먼저 심의하고 <가>번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국 건제순이다,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다 그런 것 다 논외로 하고,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방통위의 위상과 정치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을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방통위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판단에 뭔가 자꾸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방통위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통위 회의의 진행 문제에 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께 맡겨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 진행하는 순서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날을 세워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 생각에, 효율적으로 진행하

기 위해서 김재홍 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충분히 우리가 존중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돌려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런 쪽의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직무에 관한 생각은 상임위원들 각자가 다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 철학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치는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것이 혼선을 준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순서에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장 말씀, 사회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기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유인물 순서가 있는 것이고, 사전에 아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티타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9시 15분 전·후해서 다 배포를 시작했고, 사전에 절차를 지키라는 지적을 제가 최대한 정말 지켰습니다. 밤새워서 이사회 어제 9시 반에 끝났는지, 10시에 끝났는지 제가 그 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아침에 와서 문구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미방위의 질의답변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은 <의결안건>으로 토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부결시키든지 또는 계류시키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여기에서 의안 상정 문제와 의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다수 의사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수결로 하겠습니까? 정말 의안 상정과 <의결안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정말 합의사항입니다. 여야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들 간에도 안전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것은 합의사항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은 진짜 부적절하고 그야말로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도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당연히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재홍 위원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그 안건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것에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결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순서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그 순서에 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항을 먼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바>항과 <마>항은 같은 국의 업무소관으로 묶여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나>, <다>, <라>가 남는데, 제 생각에 <나>, <다>, <라>항을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30~40분에서 길어야 1시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항을 논의하는 것이 회의 전체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국회에서 2014년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수의 회의 내용 중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 중에 개인의 명예나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여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모두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 바.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 (2014-20-07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바>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 LGU+와 SK텔레콤(주)에게 불법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부과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들어가서 먼저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방통위는 이통3사의 지난 1~2월 불법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LGU+와 SKT를 주도적사업자로 선정하고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LGU+와 SKT에게 각각 14일과 7일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 미래부의 영업정지 제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동통신 시장동향을 보면 영업정지 종료일 후 번호이동 건수는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1일 2.4만건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0일부터 화요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평균 보조금 수준은 27~29만원 정도로 위반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일부 온라인 매장 등을 통해서 40만원 이상의 게릴라성 보조금이 경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이통3사들은 23일 자정부터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고, 온라인 판매 일시 중지 및 위반 대리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은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6월 10일을 전후해서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영업점 공지 등 신규모집禁지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정도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7일 초부터 시행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래부의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들의 생계 어려움 등을 고려한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LGU+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제2기 방통위에서 의결한 내용 중에 두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신규모집금지 관련해서 '시행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위원회에 위임' 이렇게 오늘 내용 중에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의결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지금 그 의결서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미래부가 먼저 영업정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바로 영업정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시기는 차기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종료된 이후에?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최근에 이동통신 시장동향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 안 됐다 판단기준이 번호이동 건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불법보조금 지급규모, 그 외에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무엇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판단하시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첫 번째는 집계가 정확한 번호이동 건수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 모니터링 하는 보조금 수준, 저희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00%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또 언론의 동향도 보고 말씀하신 시장점유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장점유율 현황, 가입자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것을 며칠자로 어떤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난주 일자까지 확인했습니다. 각 사별로 시장점유율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직원 시켜서 그 자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

나 하면 저는 5월 20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됐지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과열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 내지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3사 간의 변화추이가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축소된 가입자 규모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아직 평균 보조금은 위반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시장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열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시장동향,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10월 1일자로 새로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은 다 지났다고 치고, 6·7·8·9월, 이 4개월이 굉장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2기 위원회에서 이미 결의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는 어떻게 보면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앞으로, 특히 4개월 동안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방안으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일, 14일 이런 것을 기계적이고 단편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가장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7일 전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7일보다도 더 짧은 기간, 쇼트 노티스(Short notice)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만약에 법 규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의견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5월 20일~5월 26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시장상황을 어떻게 이용자정책국에서는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자정책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 상황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종합해서,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샘플에서 그런 정도로 나온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실제보다는 굉장히 낮게 모니터링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실제 온라인매장 등에서는 훨씬 많은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지만 저희 모니터링 샘플에 걸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과거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번호이동 건수를 보면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도에 의하면 각 이동통신사가 출시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 많이 낮춤으로 인해서 번호이동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과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통사의 정책 문제는... 이통사의 시장점유율이 5:3:2 이런 정도로 대충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데 우리가 규제를 하는 목적이 5:3:2라는 이 시장점유율을 현상 고착화시키는 것이 우리 규제의 목적이냐,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통사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서 자기들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규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현재 3사가 같이 영업을 다시 하기 시작한 이후로 일주일 정도 보면 원래 우리가 예측하던 안정적인 시장의 규모보다는 번호이동 건수가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더 과열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2사가 발이 묶여 있다가 지금 3사가 다시금 공동경쟁에 나서고, 또 10월 1일부터 단말기법에 의해서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좀 더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제해 나가느냐, 이기주 위원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시장이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여러 가지 잣대로 분석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 우리가 규제를 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시뮬거리가 생기지 않고,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으면 이 시장을 조금 더 쿨다운시키기 위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규율 방안이 무엇

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일과 14일 신규모집에 대한 시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시기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 본 다음에, 10월까지는 아직 3개월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다시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제3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저는 <3안>을...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런 안건이야말로 사전에 다 이미 토의됐고 보고 받았고 다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긴 시간 논의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요원들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큰 방향에 대해서, 정책철학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토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논의해서 합의된 견해가 <제3안>입니다.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한다' 업체들이 게릴라 전술적인 수법으로 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그렇게 대응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 말씀 드릴 것은 대리점·판매점·유통인협회가 결성됐습니다. 그쪽에서 57,000~58,000개의 전국 단말기 유통인 쪽에서 영업정지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업정지해 보니까 통신업체들 대기업들은 별로 아파하지 않고 이상하게 반사적으로 영똥한 피해를 입는 것이 5만 수천 개의 대리점, 판매점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민생입니다. 이미 협의회가 결성됐기 때문에 그분들 충분히 정책협의회를 하고 의사를 반영해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정보통신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협의회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있습니다. 아마 미래부 산하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쪽이 정책로비라고 할까, 의견제시를 많이 했고, 유통인 쪽, 소상공인 쪽에는 전혀 그런 채널이 없다가 이번에 겨우 결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 있게 양쪽의 견해를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안> 역시 시행사항을 고려해서 언제 하는 것

이 시장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엉뚱한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제3안>을 지지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나>, <다>, <라>, <마>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안>, <제2안>, <제3안> 중에 저는 대전제가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전제하에서 시행시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3안>과 <제1안>의 절충이 될 수도 있고, <제3안> 중에서 조건을 다는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를 집행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금지를 시작하는 시기를 두 사업자 간에 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주일, 14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필요하면 나누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7일 전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장이 과열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 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타이밍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2~3일 전에 통보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시점과 신규모집가입 금지를 시작하는 시점을 최단 시간 내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필요하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상황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통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한 사실조사를 저는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사실조사를 하면 항상 3개사에 대해서 일제 조사 형태의 방식을 취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 사실조사를 하되,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3개사를 동시에 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예를 들면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 그것이 1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2개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 또는 특별조사 이런 것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조사 내지는 한두 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실조사를 시행한다면 언제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를 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소한 내일부터는 바로 사실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오늘 오후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제1안>, <제2안>, <제3안>과 관계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사실조사를 오후부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실조사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보안사항 아닙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할 사안이라면 몇 시간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 문제는….

○ 김재홍 상임위원

- 보안사항이 있으면 유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수사나 조사나 개시시기, 그것이 보안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야말로 사무처에 맡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라고….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오후에 해도 겨우 2시간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사실조사는 일단 3개사에 대해서 들어가되,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까지 예에 비추어 보면 3개사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업정지를 하고,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사는 그대로 실시하되 사실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희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동통신시장의 실태를 점검한 다음에 3개사에 대한 사실조사가 아니라 그중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그 1개사에 대해서 아주 엄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좀 더 이동통신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가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 다시 거듭 이야기하는데, 지금 LGU+가 행정심판을 우리에게 청구한 것도 주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심판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은 의결까지는 필요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조사에 따른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주도한 사업자 하나 내지는 2개를 골라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놓을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는 모두 “<제3안>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 다만 여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고려하면 될 것이고, 다 <제3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중 <제3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마.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20-065~07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조사개요부터 보고 드

리겠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폰 앱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로 선정된 업종에 대하여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쇼핑몰 조사 과정에서 셀러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추가로 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에서 보듯이 셀러들 사업자는 여러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주문정보를 통합하여 엑셀 등의 형태로 판매자와 택배사에게 제공하는 전문화된 사업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은 먼저 셀러들 개발·운영사업자 6개,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개발·운영사업자 10개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박스 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는 2013년 11월 19일~29일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2월 25일~3월 14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와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셀러들 및 스마트폰 앱 개발·운영 사업자 11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주)플레이오토 등 8개 사업자이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도 2개 사업자가 있었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시 일부 사항을 누락한 회사도 2개 있었습니다.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미통지를 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한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SK플래닛이었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처분(안)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10개사입니다. 셀러들(6개)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업자(6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마트폰 앱 개발·운영업체 중 망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 중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 명령 11개사입니다. 법령 위반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11개사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처분 내역은 아래 박스에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8개 사업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8개 사업자는 현재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 구비해 놓았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관련된 사항도 시정조치 완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관련된 과태료 조치가 감경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도 다 파기가 이루어졌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사후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허가 대상은 금년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2개사 20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2개국, 도로교통공단 7개국, 서울특별시 2개국, 그리고 (재)국악방송과 (재)극동방송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사)광주시민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등 7개 사업자의 7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기간 중에 방송운영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 실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상파방송 심사위원회와 공동체라디오방송 심사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가 각각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시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수와 자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입니다.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심사항목 및 배점을 각각 별도로 구성코자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형평성,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13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역시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11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과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심사기준과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과 각각에 대한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방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한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

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중에 재허가 대상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11월에 걸쳐서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재허가를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에 대부분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재허가해서 같은 심사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다, 또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도 2011년에 했는데 그때 일부 조정된 점, 심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역시 같은 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 종전의 심사 기준, 심사항목, 배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 '13년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심사기준이나 항목 그리고 실제 방송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우리가 제시한 650점 미만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받고, 지금 이 분야에 실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재허가 기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재허가를 해 준 방송국 대상이 총 몇 개나 되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총 46개 사업자에 약 380개 정도 대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재허가 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전파법상에 5년으로 되어 있고, 2년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작년은 4년을 부여받은 데도 있고, 3년 받은 데도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재허가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회 규제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식행위 내지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인가요, 법을 개정해서 당초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7년으로 그 범위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1년 내지 2년의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된 정신은 분명히 재허가 기간이 아주 짧으니까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잦은 재허가로 인해서 방송 업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2년을 늘렸을 때에는 이 재허가 기간을 선진국에 비해서 늘리라고 하는 입법정신이 있었는데, 방통위에서 운영하면서 그 입법정신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동안 운영해 왔는지...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이후에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에 따라서 7년으로 되어 있지만 방송국의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2010년도 최초 법 개정 이후에 시행할 때에는 3년 허가사업자를 대부분 했지만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자는 4년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작년에 심사했을 때에도 점수기준을 두고 3년, 4년을 나누어서 변별력 있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5년으로 받은 사업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그동안 재허가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04년 iTV가 재허가가 거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딱 1건이었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 외에 300여개의 방송사 중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허가는 대체로 다 시행되어 왔고, iTV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사례로 재허가가 거부됐는데, 어쨌든 법을 당시에 개정했을 때 그 정신은 우리 행정력 낭비들을 다 고려해서 또 선진국의 사례들을 다 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재허가 기간을 아주 짧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정신에서 한 것이니까, 지금 1년을 더 늘려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간단한 것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별 이견이나 의견은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하면 별 문제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상임위원들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을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9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분들만 계속 넣어서 하면 그것은 아주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고, 계속 하던 분이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 언론개혁운동 활동가도 좋고 반드시 그런 분들을 한두 명 넣어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번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용역과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4-20-06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

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허가 대상은 역시 금년도 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지상파 DMB 방송국, 즉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각각의 지상파DMB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방향은 재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과 방송법령 준수 여부, 그리고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방통위가 제시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시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심사위원 수와 자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법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항목을 결정코자 합니다.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감점 등 세부심사기준과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중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9월에 걸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접수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허가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며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잘 정하겠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6개 DMB사업자인데 KBS, MBC, SBS, YTN은 각자 자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채널과 연계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DMB와 유원미디어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예, 직접사용채널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QBS와 U1이라고 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유원은 QBS?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유원미디어는 U1이라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DMB는 QBS라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각자 자기들 독자적인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임필교 지역방송팀장

-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지금 QBS는 JTBC 채널을 많이 갖다 쓰고, 뉴스Y 채널도 쓰고 있습니다. U1은 MBN 채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처음 DMB를 할 때에는 각자 자기들이 독자적인 채널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허가가 나갔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독자적인 채널 운영보다는 다른 채널을, 일종의 채널 임대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측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 허가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의견은 없고 자료제출 요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재허가 재승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연구 다 하고 나서 그 결과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보고대로 하더라도 연구계획을 사무처에서 수립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상파DMB 이 3가지 방송사업자들 섹터에 대한 시장현황, 경영현황, 운영현황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방통위가 어떠한 조치 내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제도개선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20-06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편성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한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편성고시(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2013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제작 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올해 2월부터 사업자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편성고시 개정안은 올해 3월 7일 위원회에 보고하고, 3월 13일~4월 21일까지 입안예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고, 5월 21일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를 통해서 종합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문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80% 이상’, EBS ‘70% 이상’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제작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치인 80%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예고를 종합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전문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안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개정안은 입안예고 내용 중 우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전문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 편성비율 규제를 6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종합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와 문화부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비율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완화 여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행규정, 입안예고안, 개정안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은 방송법 시행령과 편성고시를 통해 1개 국가의 수입물 편성비율을 80% 이내에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의 경우 동 규제를 위반하기 쉬워 외국물 편성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2편 또는 120분 이내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안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개정안은 입안예고(안)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매 반기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 부분을 ‘각 2편 또는 각 120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유예 특칙 신설입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방송 시 편성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편성비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특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안예고하였고, 개정안의 내용도 입안예고(안)과 전체적으로 동일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편성비율 적용기간 신설입니다. 신규로 방송을 개시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편성비율 적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2003년부터 舊 방송위 결정으로 지침의 형태로 적용하였던 것을 고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의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개정안도 입안예고안과 동일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6월 5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가.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20-06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홍 상임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직접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가능한 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어제 28일 밤 KBS 이사회는 토론만 벌였고 표결을 6월 5일 이후로 넘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 5시에 KBS의 새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후의 방송은 모든 뉴스, 시사물의 고정 진행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엄청난 방송파행 사태이고,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진상을 알기 위한, 파악하기 위한 조사, 저번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린 그 조사라는 것은 우선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러 여야 의원들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 드린다면 방송법 제44조 KBS의 공적책임 이행입니다. 제43조는 KBS의 설립근거입니다. 방송법 제98조제1항, 여기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니다. 방송법 제99조제1항 행정처분 실시도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법 제4조 제1항과 제105조제1항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규정입니다. 이것을 위반했다는 내부 고발이 양심선언 수준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도국장입니다. 보도책임자입니다. 제일 보도 편성 과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간부입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내부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재난방송의 피해자인 유족들이 격렬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적 조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회 미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합일된 견해를 지적하고 주문했습니다. 주요 경과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그것으로 빚어진 재난방송 과정에서 빚어진 KBS 사태에 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근거입니다. 지난 5월 9일 처음으로 제가 긴급사안을 발언한 이래 매주 회의 때마다 오늘 네 번에 걸쳐서 긴급사안으로 발의했고, 오늘 겨우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겨우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통위를 대표해서 위원장께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지금 내부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과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에 걸쳐서 토의안건으로만 보고했고 논의했던 것을 그 후속조치 성격으로 <의결안건>으로 제가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법적 근거를 다 댄 것이고, 국회의 요구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유기 상황이 안 되려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견해가 나왔고, 국회에서 아마 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선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실을 파악한 뒤에, 진상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조치할 것인가 검토해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이 사태와 관련된 가능하면 최소화해야겠지만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갖다 놓고 분석·정리해서 이것이 방송법 위반사항이다, 검찰에 수사의뢰 고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처분권, 행정처분 시정명령으로 끝내야 할 것인지를 결론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 하나는 방송법 제99조제1항 시정명령의 근거입니다. ‘방송중단 등과 그에 따른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방송중단이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송중단만을 명시해 놓고서 그것이 시청자 이익 침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중단 등 방송과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는 이미 2~3주 전부터 이어왔지만 어제 이사회는 보류,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양대 노조의 파업은 엄청난 방송과행을 불러왔고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내역 중에 유인물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주장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보도편향성에 대한 재난방송 보도 절차와 과정에 대한 내부고발 그 내용과 그에 대한 KBS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KBS 재난방송 보도체계나 뉴스제작 관련 절차 및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사이에서 끝나야 할 일이 다른 외부세력에 의해서 또는 편성권에 관여할 수 없는 경영진이 관여했는지를 명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KBS 구성원이니까 편성권이나 보도과정에 관여해도 괜찮다? 그것은 아닙니다. 방송법에 명시된 대로 경영진은 편성권에 관여하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KBS 구성원 제작거부 등으로 인해서 지금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 방송파행 차질 현황입니다. 특히 제작거부 또는 오늘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 이전과 이후의 방송시간 차질과 프로그램 내용 파행과 진행자 교체를 상세히 이전과 이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작거부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일종의 싸움이라고 할까, 협상할 수도 있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측에서 사장 경영진 이름으로 일간신문 5대 신문, 6대 신문에 일제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무엇인지, 얼마를 썼는지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회에서도 요구할 텐데 KBS에 직접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KBS 제작거부나 파업에 따른 방송차질 파행과 방송의 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실에 또는 시청자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역시 KBS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데, 前 보도국장은 됐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KBS이사회가 이런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경영진의 책임을 다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일시, 참석자, 회의 안건입니다. 여기에 속기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이 들어가고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속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는지, 어떤 안건으로 토의했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제출을 해 놓고 분석·정리해서 이것은 방송법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고발해야지요. 고발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처분하면 되겠다면 시정명령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KBS 사측의 사장과 경영진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진술할 것이 있으면 와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연락 통보하고, 와서 하면 그것도 사실파악의 중요한 하나의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명령 등의 근거는 제99조제1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이 ‘등’이라는 것은 방송중단뿐만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방송파행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은 역시도 KBS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며, 유일한 공영방송이며,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상황에서 제대로 방송했는가, 거기에서 왜 그렇게 피해 당사자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는가,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죄·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먼저 자료제출을 최소한 요구하고 그것을 분석·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법성, 불법여부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는 취지에서 우선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제안하신 것을 들어보면 물론 다 관련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그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우선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KBS의 공적책임 이행, 방송의 공정성 내지는 공익성 침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이런 우려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침해 여부, 공적책임의 이행여부, 편성의 자유 독립의 훼손 여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방송법에 규정을 명문화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침해여부를 방통위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KBS의 책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내역을 보시면 보도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오보와 편향보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제가 방송법을 봐도 이것이 방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고, 판단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방통심의위원회도 있고 KBS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처분근거 5페이지에 정리하신 것을 보면 방송차질 발생여부 그리고 방송법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과 공익성, 재허가 조건 의무 이행, 그리고 공사의 공적책임인데 어느 것 하나를 보더라도 방통위가 이것에 대한 판단, 시정명령, 처분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재허가 시 제출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불이행 여부에 따른 자료요구와 거기에 대한 처분은 재허가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이 3년인지, 4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이행계획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본다면 저는 허가유효기간의 제도의 취지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회 규정을 봤습니다. 방송법 제46조에 보니까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KBS의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둔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9조 이사회 기능에 보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제1호에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7호에 보면 사장, 부사장 임명 동의 그리고 제15호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래서 지금 KBS의 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지만 오늘 김재홍 위원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내용이나 처분근거나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아무리 현행법을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98조 자료제출 규정, 저도 그동안 법을 많이 봤습니다만 자료제출 규정은 저는 굉장히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법이나 개별조항을 보면 예를 들면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98조 이 규정은 선언적이고 보충적인 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과 제출 요구하는 자료내용을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제출요구를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방통위원으로서 작금의 KBS 사태에 대해서 우려와 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KBS 사태는 국민들의 시청권,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KBS 내부의 성숙한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또 무사히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KBS는 특정 사장이나 또 노조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이고 정부에 의한, 언론에 대한 검열,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될 소중한 헌법정신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언론에 대한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법조문에 언론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최근 KBS 사태와 관련해 우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계속 직접적인 간섭과 규제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KBS가 현재 내부적으로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의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관해서 방송법에는 자료제출이 말씀하신 대로 직무수행을 위해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통상적인 방통위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KBS의 상황에 대한 압박을 위한 자료제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자료제출이라는 것을 보면 시청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 이용자보호를 위한 것, 시청자불만처리,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의 운영 등 설치법상에도 우리의 직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은 결국 방통위가 통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자,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KBS에 대한 압박을 할 목적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모두에 제가 우려했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시정명령 부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부분도 제의를 하신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자료제출 요구만 논의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 사안 하나하나에 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제1항 방송편성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방송사의 편성권에 대해서 방송사의 사장이 과연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는 편성의 책임자는 사장입니다.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편성에 관여하려고 하다가 2000년대에 그렉 다이크라는 사장이 결국은 물러났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에 과연 KBS 내에 있는 사장이 '누구든지'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화시켜서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정확한 보도 부분, 주로 뉴스 제작과 관련된 절차, 의사결정, 또 편향보도, 보도의 공정성 부분,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런 언론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이사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KBS이사회는 KBS의 최종 의결기구이고, 우리가 KBS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K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타사항에 보면 'KBS 사장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필요' 이것은 정말 저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언론사 사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언론사에 대해서 지금 KBS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BS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자 자기들의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통위가 해야 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고유 업무, 재허가하는 절차는 우리가 또 이번 사태도 그 재허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나서서 중간단계에서 자꾸 방송사의 상황에 대해서 관여와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언론통제로 외부에 비칠 수도 있는 우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내용에 대한 해석은 보다 더 소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는 선진적인 정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토론을 하는 것만으로 저는 작은 의미를 느낍니다만 역시 거리는 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반박을 하겠습니다. 허원제 부위원장님, 이기주 위원님 두 분이 함께 법

적 근거에 대해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는 정말 법적 규정을 도외시하거나 정말 자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방송법 제98조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냥 선언적으로 둔 것이다? 저는 국회 미방위에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직무유기다” 하는 것을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선언적 규정이다, 이것은 저는 부적절한 견해라고 봅니다. 또 편성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KBS 내부의 편성절차에 의하지 않고 거기에 간섭하면 말하자면 누구든지에 해당되겠지요. 이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KBS에는 노사편성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민영방송사는 방송법 구성에 규정하려다가 아직 못 했지만 KBS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그 노사에 함께 참여하면 편성위원회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진이 경영책임자가 보도간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누구든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권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허원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KBS 내부 역량으로 해결되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KBS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KBS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KBS 대표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제작국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를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KBS를 책임질 수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 역량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내부에서 격론을 벌이든지 합의해서 이 중요한 것은 방송과행 사태를 수습해라,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로서는 대부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좌우지간 노조를 달래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그래서 KBS 구성원, 책임 있는 간부들과 기자들과 PD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저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 분야에 더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 드려서 평상시에 우리가 KBS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국민적·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법에 따라서 특정한 비상상황에서는 이것이 무한자유이겠습니까? 그러면 재난방송도 방송의 자유에 맡기면 방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KBS가 이런 재난방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도 완전히 왜곡방송을 하거나 편향방송을 하거나 피해자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면서 정부를 비호하는 편향된 방송을 해야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방송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과 법적 근거가 방통위에 있고 미래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평상의 보도내용, 방송언론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상대성,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 이후에 전쟁 상황 말고 가장 심각하고 최초의 재난사태에

대해서 방송이 잘못했다, 정부기구로서 방통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심각한 항의가 있었고, 시청자 권익이 침해됐고, 또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입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법적으로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안 하면 직무유기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하면 탄핵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심각한 상황,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저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내부에서 여야가 갈리고, 보수·진보적인 견해로 갈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부기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어?', '방송·통신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데야?',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국민 여론이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9월,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예산결산심의회 국회 본회의에서 물론 대정부 질의에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결위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결위에 예산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결위 과정에서 방통위의 위상 회복과 조직 인력을 재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 청구하는 것을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뉴스의 시사물에 고정 진행자가 교체됐습니다. 취재기자들의 리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동영상이 아닌 스틸 사진만 내보내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 파행이고 시청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은 TV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동영상이 아니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까? 스틸사진만 내걸고 지금 보도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지 뜯어서 그대로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의 주관사로서 해야 할 일인지, 이것을 그냥 방관만 해야 하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작거부 파업 이전과 이후의 방송파행 차질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사회에 최소한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 얼마나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회의를 몇 차례 했으며, 토론을 했으면 그 안건이 무엇인지, 그 회의록·속기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부를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정책기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 요구만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시정명령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지금 저와 부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처음에 발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제 의견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8조 자료제출 규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법 제85조의2 금지행위 관련해서 85조의2제4항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 제63조의4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절차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8조를 보더라도 지금 제1항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제2항·제3항과 관련해서 방통위 규칙 제36조에 그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98조의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이 규정만 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방송에서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가지고 김재홍 위원님은 방송법 제4조, 제6조, 제44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난방송 차원에서 검토하려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제40조까지 이르는 그 규정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제6조, 제44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규정들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는 그야말로 신중해야 하고, 제가 봐서는 KBS이사회 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이거나 KBS 자체를 빼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중에 일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나온 이야기들 중에 재허가나 재난방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안건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 논의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더 진전이 있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자료제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는데, 자료제출을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떠나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만약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위원회에서 무슨무슨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의결할 내용인지를 먼저 정해야지, 오늘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더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의 당부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오늘 여기에서 굳이 논의하지 않더라도 또 바로 상임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KBS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정부가 나서서, 방통위가 나서서 방송사에게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법 조항은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 특히 자료제출 요구의 건건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자칫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우리 정부가 직접 관여해 들어가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도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허가 과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를 꼭 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자료라고 지정해서 의결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상의해서 자료제출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느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절충안이라고 할까,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무처 방송정책국도 있으니까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님들의 견해가 정말 부정적이라고 할까, 보수적이라고 할까, 정말 안일하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과연 위원장님께서 국회 미방위에 나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답변할 수 있을지, 저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통위를 대표해서 허원제 부위원장님, 이기주 위원께서 국회 미방위에 나가서 그렇게 답변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서 질책 당할 수 있을지, 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언론의 자유 이야기가 나와서 가장 성역이라고 할까, 간섭할 수 없는 언론 플러스 신문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또한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기간방송이기 때문에,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기 때문에 KBS 공사의 법적 지위와 그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신시장이 과열됐을 때 사실조사를 함으로써 쿨다운 냉각시키고 진정시키는 것과 똑같이 지금 방송과 KBS 사태가 심각히 악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우리가 분석·조사·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와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국민의 관심사,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내외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고 방통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한의 역할, 직무수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현재 KBS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결사항>이라고 정리하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세부내역은 차치하고….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세부내역은 좀 더 상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그것이 우선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우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의결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지금 KBS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사실여부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실여부도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KBS 사태에 대한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럴 상황이 아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KBS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것은 제가 먼저 <의결사항>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 반론이 나와서 자꾸 길어지니까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기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오늘 제안하신 안건과 그동안 쪽 회의 과정에서 발표하신 내용 그 맥락에서

하는 KBS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적절치 않고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결주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주장하시는 것은 KBS의 상황과 관련해서 방송법 제 98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의결주문으로서 <의결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저는 방통위 설치법 심의·의결사항도 봤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는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심의·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단순히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고 그 뒷단의 시정조치까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적절치 않고, 그래서 오늘 의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통위 설치법, 반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언할 때 심의·의결사항의 4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방송의 기본계획 입안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다, 근거를 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KBS 상황과 관련해서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선 <의결사항>인지에 관해서는 우선 제98조제1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제출의 내용이 우선 확정되어야만 의결하더라도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이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사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KBS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빨리 이 사태가 원만히 잘 해결돼서 방송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다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것의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만약에 필요로 할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향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처분, 권한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굳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재난방송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편의상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루어진 방송을 재난방송이라고 했을 때 이 재난방송이 아직 구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선체 인양도 되지 않고 있고, 아직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방송이 재난과 관련해서 무슨 특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각 방송사에서의 재난방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제정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난방송을 실시했을 때에는 방송사업자가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가 60여개가 넘습니다만 다른 방송사보다는 그래도 TV방송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KBS, MBC, SBS 그다음에 종편 4곳, 보도PP 2곳 해서 이곳에서는 재난방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에 관한 통보결과를 정리해서 내줄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고시, 재난방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난방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재해서 그런 자료들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제출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더 논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KBS 상황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끝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결안건은 그냥 계류시키는 것입니까,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사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할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계속 논의하는데...

○ 김재홍 상임위원

- 논의해 가는데 사무처 논의는 할 수 있고, 제가 발의한 이 안건은 부결, 폐기시키는 것인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사무처 논의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지금 가결, 부결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저나 또는 이기주 위원님, 부위원장님이 명확하게 표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결, 부결을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는 지금 계속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결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다음 회의에 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계류시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대외적으로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 토의했고, 아직 계류시켜 놓았다,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에 가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논의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라도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12조, 같이 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 부터 한 5~6개의 근거조항을 제시했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에서 그냥 들여다봐도 상식 차원에서 제1항 방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방송기본계획은 평상시의 보도뿐만 아니라 재난방송, 전시방송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기본계획입니다. 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사항, KBS는 재허가 받을 때 제출한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0항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입니다.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편향보도입니다. 제15항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입니다.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불만처리지요? 재난방송에서 재난의 피해 당사자인 유족들의 심각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불만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상의 근거조항이 우리 심의·의결사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 의견을 이야기 안 했다면 제가 의견이 같거나 동의를 해서가 아니고, 저도 반대하는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없어서 안 했을 뿐입니다. 지금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제1호, 제6호, 제10호, 제15호 저도 똑같이 봤는데 저는 여전히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또 그 논의를 오늘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금 4개 호에 오늘 제안하신 안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 설치법 심의·의결사항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와 방송

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논의해서 합의해서 외부의 로펌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외부에 법률자문을 구할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부터 의견이 다르고 그다음에 자료제출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상당한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을 일단 지금 이것이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결, 부결을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하면서 추후 상임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일부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침을 정하든지 하는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김재홍 위원께서 KBS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의견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방통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합의체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안건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KBS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대해서도, 저도 KBS 출신으로서 KBS의 내부적인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KBS 내부에 있는 노조든지, 경영진이든지, 이사회든지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제3자 내지는 정부, 누구든지 관여를 안 해줬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제발 간섭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확대되어 나갈 때 KBS 내부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이 되는 것이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량도 더욱 더 함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안건 자체는 계속 논의해 나가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법률적인 참고자료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제 4조제2항이 오늘도 또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전 회의 때도 논의가 돼서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누구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 사장도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논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보실 것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돼서 그 조항이 없어졌습시다만 2009년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방송법 제4조제2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편의상 신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문법 제3조제2항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2006년 6월 29일에 2005헌마165 결정으로 그 규정을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2항은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세력에 의한 규제·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방송법 제4조제3항과 동일한 규정이 신문법 제3조제3항에 있는데 그 제3항에 대해서 이것은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이다, 제2항에서 '누구든지'에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된다면 다시 말해 제2항을 신문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다면 제3항에서 다시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특정하고 이로 하여금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는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등등 하면서 쪽 판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의 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하나 말씀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인쇄매체와 전파매체의 차이입니다. 신문법을 여기에 인용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치언론학의 기본입니다. 전파매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신문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신문은 성역입니다. 언론자유는 성역이 신문입니다. 그 내부에서도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의 분리가 내부의 노사 규약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인쇄매체 신문과 언론의 자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다 하는 전제조건 위에서의 독립과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재난방송 상황에서는 그 주관사나 공영방송이나 그만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날짜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37분 폐회 】